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2042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600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합520428 판결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변론 종결 2017. 8. 31.

판결 선고 2017. 9. 14.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3,246,700원 및 그 중 172,617,288원에 대하여는 2016. 3. 18.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7. 5. 22.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5. 12. 28. 체결된 288,000,000원의 금전증여계약을 273,246,7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73,24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6. 2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한 2011. 6. 24.(그 뒤 2016. 6. 17.로 변경)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일반자금으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2015. 6. 16. 피고 회사와 보증금액 100,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15.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지멘스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보증대상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지멘스 주식회사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지급기일 2016. 6.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위 회사로부터 물품 및 용역을 공급받았다.

3) 피고 B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의하면, 신용보증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을 경우 피고 회사, B은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제6조). 또한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 1) 지멘스 헬스케어 주식회사(지멘스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지멘스 주식회사의 모든 매출채권을 양수한 회사이다)가 2016. 1. 4.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는 그 무렵 국민은행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6. 3. 18.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라 국민은행에게 172,863,553원(= 원금 170,000,000원 + 이자 2,863,553원)을 지급하였다.
- 2) 원고는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따라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면서 246,265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금에 대한 변제일부터 회수일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은 67원[$= 246,265 \times 1/365(2016. 3. 18.) \times 10\%$]인바, 2016. 3. 18. 기준으로 대위변제 원리금은 172,617,355원(= 대위변제금 172,863,553원 - 회수금 246,265원 + 확정지연손해금 67원)이다.
- 3) 원고는 2016. 6. 15.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지멘스 헬스케어 주식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약속어음금 10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 4) 원고가 이 사건 각 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채권보전조치비용으로 지출한 대지급금은 629,345원이고, 위 각 보증약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연 10%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 1) 피고 B은 2009. 7. 28. E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F아파트, 8동 404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5,000,000원, 임대기간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F아파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갱신되면서 최종적으로 임대차보증금 320,000,000원, 임대기간 2015. 8.

31.까지로 변경되었다.

2) 위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 E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2015. 10. 8. 피고 B의 처인 피고 C의 우리은행 계좌로 3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12. 28. 피고 B의 씨티은행 계좌로 28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고 B은 2015. 12. 28.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88,000,000원 중 250,000,000원을 처남인 D에게 이체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이체행위'라 한다), D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이체받은 돈을 다시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38,000,000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이체행위'라 한다).

4) 한편, 피고 C는 2015. 11. 20. G(이후 소유권 변동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H로 변경됨)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I아파트, 201동 702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80,000,000원, 임대기간 2015. 12. 10.부터 2017. 12.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I아파트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위 J과 합의한 바에 따라 2015. 11. 20. 계약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10. 1차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였으며, 2015. 12. 28. 2차 중도금으로 250,000,000원을 이 사건 제1이체행위 이후 D이 순차 이체하여 준 돈으로 지급하였으며, 2016. 8. 31. 나머지 잔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B: 다툼 없는 사실

○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4,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회사, B)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273,246,700원(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잔액 172,617,288원 + 확정손해금 67원 +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100,000,000원 + 대지급금 629,345원) 및 그 중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잔액 172,617,288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3. 18.부터,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6. 6.

15.부터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7. 5. 22.까지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 C)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인 2015. 12. 28. 무렵에는 아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원고와 피고 회사, B 사이에 이 사건 각 보증약정과 위 연대보증약정이 각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이체행위 후 1주일 만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이체행위 당시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피고 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C에게 증여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이체행위는 피고 B이 D, K에 대한 기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증여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고).

나)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호증, 을 제3, 6, 7, 8,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 중 280,000,000원을 피고 C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B과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1) 피고 B은 이 사건 각 이체행위 당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2015. 12. 28. E으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288,000,000원은 위 피고의 유일한 재산이다.

(2) 이 사건 제1이체행위에 이어 이루어진 D의 이체행위로 인해 피고 C에게 위 이체금원이 귀속되었고, 피고 C가 자기 명의로 체결한 I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위 돈을 사용함으로써 위 돈의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피고 C에게 귀속된 점, 이 사건 제1이체행위 이후 이루어진 D의 이체행위와 관련하여 D과 피고 C 사이에 차용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이체행위가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변제로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는바, D은 위 이체금원을 보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B, D의 순차 이체행위로 피고 C에게 위 이체금원에 대해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점, 피고 B, C는 부부 사이로 피고 C가 임차한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바(피고 B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2달 전인 2016. 2. 15.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피고 C 앞으로 재산을 이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 C는 피고 B이 2015. 11. 20. I아파트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여 주어 위 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이체행위를 포함한 피고 B,

D의 순차 이체행위를 통해 피고 B이 2015. 12. 28. 피고 C에게 2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 C는, 이 사건 제1이체행위가 피고 B이 처남인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피고 B과 D 사이에 이 사건 제1이체행위 당시 이체금원 상당의 채권·채무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09. 8. 19. F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1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 C 또는 피고 B이 2009. 9. 29.부터 2010. 12. 13.까지 사이에 D에게 약 15차례 매월 600,000원 가량을 송금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는 이 사건에서 피고 B의 D에 대한 구체적인 대여원리금의 계산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이 사건 제1이체행위로 인한 이체금원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 B이 D으로부터 2009. 9. 18. F아파트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11. 17. 생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를 합산한 대여원리금 정산액(2016. 9. 22.자 준비서면)이라고 주장하다가, 위 대여원리금에 2013. 9.부터 2015. 12.까지 피고 C가 D으로부터 매달 지원받은 4,000,000원을 포함한 대여원리금 정산액(2017. 8. 30.자 준비서면)이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그 밖에 차용조건, 변제기 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 C가 피고 B의 차용금채무라고 주장하는 2015. 11. 17.자 20,000,000원은 D의 처인 L가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2013. 9.부터 2015. 12.까지의 이체금원은 D이 피고 C에게 이체한 것으로 피고 C 스스로 월급 또는 생활비 지원(증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별다른 사정없이 위 돈을 남편인 피고 B의 D에 대한 채무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 C, B과 D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들이 일정기간 매월 600,000원씩 송금한 것을 반드시 이자 명목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과 D 사이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주로 D이 위 피고들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증여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는바, D이 위 피고들로부터 대여원금의 2배에 달하는 돈을 변제받는거나 변제받은 즉시 부부의 다른 일방에게 이를 대여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 B이 이 사건 제1이체행위 무렵 D에 대하여 이체금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이 사건 제2이체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9. 11. K 명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로 4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피고 C가 피고 B으로부터 38,000,000원을 이체 받아 다음날인 2015. 12. 29. K 명의 계좌로 위 이체금원 중 35,160,000원을 다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B와 K 사이에 대여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K이 피고 B에게 송금한 금액과 피고 C가 K에게 송금한 금액이 다른 점, 피고 B이 굳이 피고 C의 계좌를 거쳐 K에게 채무변제를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이체행위에 의한 이체금원 역시 피고 C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된 것으로서 피고 B이 2015. 12. 28. 피고 C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이체행위를 통해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5. 12. 28. 체결된 288,000,000원(= 이 사건 제1이체행위로 250,000,000원 + 이 사건 제2이체행위로 38,000,000원) 상당의 금전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 2016. 3. 17.까지의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등 상당액인 273,246,7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273,24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함중식

판사이소민

판사차윤제

1) 원고는 청구취지 제2항에서 취소대상 금전증여계약 일자를 피고 C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의

잔금지급기일인 '2015. 12. 10.'로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소장 제출 시 원고가 피고 B, D의 금전거래내역을 보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기초로 증여일자를 추정·기재한 점,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이 별도 합의로 변경되었고 피고 B이 변경된 지급기일에 피고 C에게 금전증여를 한 것인 점, 청구원인에 비추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피고 C에게 증여된 돈인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취지 제2항의 금전증여계약 일자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2)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